
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의 안 번 호      | 제 700 호        |
| 의 결<br>연 월 일 | . . .<br>(제 회) |

충청북도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지원 조례안

|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|
| 발 의 자 | 연종석 의원 등 7인  |
| 발의연월일 | 2021년 4월 13일 |

## 충청북도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지원 조례안 (연중석 의원 대표발의)

|    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<br>번호 | 700 |
|----------|-----|

발의연월일 : 2021년 4월 13일

발 의 자 : 연중석, 송미애, 윤남진  
이상정, 이상식, 허창원  
이상욱

### 1. 제안이유

-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의 성공적인 구축 및 조기안착, 미래 혁신을 견인하기 위한 활용 극대화 방안 마련
- 전문인력 양성지원, 가속기 연구 성과 후속 실용화 지원, 정주여건 조성 등 행·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가속기 활용 산업 육성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- 가속기의 성공적인 구축·운영·활용을 통해 관련 산업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 규정(안 제3조)
- 가속기와 관련된 지원 사업을 명시하고,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(안 제5조)
- 기본계획 수립, 지원정책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방사광가속기 지원 위원회를 둠(안 제6조)
- 가속기지원 사업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포상 규정 마련(안 제14조)

### 3. 조례안전문 : 붙임

### 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붙임
- 조례안예고 : 2021. 3. 29 . ~ 2021. 4. 10. (12일)
- 관련부서 협의 :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기획조정과와 협의함
- 비용추계 : 붙임

## 충청북도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과학기술기본법」 제28조 및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의 구축·운영·활용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방사광가속기”란 전자가 자기장 속을 지날 때 궤도가 휘어지면서 접선 방향으로 나오는 빛을 이용하는 장치를 말한다.
2. “방사광가속기 활용지원센터”란 가속기 기술경쟁력 향상 및 관련 산업 저변확대를 위해 구축한 센터를 말한다.

제3조(도지사의 책무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(이하“가속기”라 한다) 구축·운영·활용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가속기의 성공적인 구축·운영·활용을 통해 관련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·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) 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가속기 구축·운영·활용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
2.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
3. 청년, 여성 등 지역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인력 활용에 관한 사항
4. 가속기 관련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
5. 중소기업(청년기업 및 여성기업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빔라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

6. 가속기 연구데이터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

7. 그 밖에 가속기 구축·운영·활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시·군, 교육기관, 연구기관 및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이나 기관·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5조(가속기의 지원) ① 도지사는 가속기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보조·출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가속기 부지조성에 관한 지원

2. 가속기 활용지원센터 구축·운영에 관한 지원

3. 중소기업 빔라인 이용료 지원

4. 청년·여성 연구자 기초연구 활용 지원

5. 가속기 관련 R&D 사업 발굴 지원

6. 전문인력 및 융합연구인력 양성 지원

7. 가속기 연구성과 후속 실용화 지원

8. 가속기 관련 기업의 유치 및 정착을 위한 지원

9. 가속기 관련 세미나, 전시회 등 이와 유사한 행사의 개최 및 유치·참여·참관 등의 지원

10. 가속기 해외시장 진출 및 마케팅 활성화 지원

11. 가속기 공동연구개발 및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원

12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별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③ 도지사는 제2항에 의한 위탁사업의 수행에 따른 소요경비를 협약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.

제6조(위원회 설치) ① 도지사는 가속기의 성공적인 구축·운영·활용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방사광가속기 지원 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.

1. 가속기 지원 기본계획 수립·시행·평가에 관한 사항
2. 가속기 지원 정책의 변경에 관한 사항
3.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7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가속기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
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, 당연직 위원은 충청북도 가속기업무 담당국(단)장, 청주시 가속기업무 담당국장이 되며, 위촉직 위원은 가속기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.

④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임기를 2년으로 한다. 다만,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⑤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충청북도 가속기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.

제8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.

⑤ 위원회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, 위원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관련 안건에서 제척(除斥)될 수 있다.

⑥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실무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⑦ 위원회는 도지사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 다만,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그 결과를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.

제9조(위원의 해촉)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
1.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
2.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

제10조(전문가의 의견청취)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학계·산업계·연구계 등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11조(수당지급)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12조(비밀의 누설금지) 위원이나 관계직원 및 공무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.

제13조(준용) 위원회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4조(포상) 도지사는 가속기 지원사업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나 단체에 「충청북도 포상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관 계 법 령

### □ 과학기술기본법

제28조(연구개발 시설·장비의 확충·고도화 및 관리·활용) ① 정부는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시설과 장비 등을 확충·고도화하고 관리·운영·공동활용 및 처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·장비의 확충·고도화, 관리·운영·공동활용 및 처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·장비의 관리·운영·공동활용 및 처분에 대한 표준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른 표준지침의 적용 대상,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 □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

제6조(기초연구사업의 추진)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기초연구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, 기초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기초연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
2.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
3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·산업대학·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(이하“대학”이라 한다)
4. 국공립연구기관
5.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

② 제1항에 따른 기초연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 
이외 자의 출연금, 「과학기술기본법」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 
(이하“진흥기금”이라 한다)의 운용수익금과 제13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 
연구개발비로 충당한다.

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제1항에 따라 기초연구사업을 위탁받은  
기관의 장은 기초연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 
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과 협약을 맺어 그 기관이나  
단체로 하여금 연구하게 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른 기초연구사업의 추진과 제3항에 따른 연구과제의 선정 등  
기초연구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

## 1. 사업개요

- 빠른 기술혁신과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과학기술 자체를 선도형으로 혁신하기 위한 대형연구시설인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을 행·재정적으로 지원하여 전문인력양성 및 지역경제·과학기술 성장을 견인하기 위함

## 2. 비용 발생 요인

- 부지조성, 활용지원센터 구축, 중소기업 빔라인 이용료, 청년연구자 기초연구 활용지원, R&D사업 발굴, 전문인력양성 지원, 기업유치 지원, 각종 행사개최, 해외시장 진출 및 마케팅 활성화,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등

## 3. 관련 조문

제5조(가속기의 지원) ① 도지사는 가속기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보조·출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가속기 부지조성에 관한 지원
2. 가속기 활용지원센터 구축·운영에 관한 지원
3. 중소기업 빔라인 이용료 지원
4. 청년·여성 연구자 기초연구 활용 지원
5. 가속기 관련 R&D 사업 발굴 지원
6. 전문인력 및 융합연구인력 양성 지원
7. 가속기 연구성과 후속 실용화 지원
8. 가속기 관련 기업의 유치 및 정착을 위한 지원
9. 가속기 관련 세미나, 전시회 등 이와 유사한 행사의 개최 및 유치·참여·참관 등의 지원
10. 가속기 해외시장 진출 및 마케팅 활성화 지원
11. 가속기 공동연구개발 및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원
12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## 4. 비용 추계결과

- 추계전제 : 「방사광가속기 유치계획서」의 지원계획에 따름
- ※ 조례안 제12조 위원회 수당은 추계대상에서 제외

- 추계결과 : 2021년부터 향후 7년이상 세출 3,176억원 정도 소요
- 재원조달방안 : 국비, 지방비 합계 3,176억원  
(부지조성,전력시설) 지방비(도·시비) 100% (진입도로) 국비 100%  
(사업지원) 국비 50%, 지방비 50%

## 5. 연도별 비용추계서

(단위 : 억원)

| 구 분          | 1차년도<br>(2021년) | 2차년도<br>(2022년) | 3차년도<br>(2023년) | 4차년도<br>(2024년) | 5차년도<br>(2025년) | 6차년도<br>(2026년) | 7차년도<br>(2027년) | 계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|
| 세 출          | 271             | 385             | 459             | 740             | 460             | 462             | 399             | 3,176 |
| 부지조성         | 160             | 240             | 240             | 240             | 240             | 240             | 240             | 1,600 |
| 고압 전력시설 구축   | -               | 30              | 87              | 87              | 87              | 89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| 380   |
| 진입도로 개설      | 111             | 110             | 127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| 348   |
| 가속기 활용지원센터   | -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| 350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| 20              | 370   |
| 중소기업 범라인 이용료 | -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| 4               | 4     |
| 청년·여성연구자 지원  | -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| 10              | 10              | 10              | 10              | 40    |
| R&D 사업발굴     | -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| 30              | 30              | 30              | 30              | 120   |
| 기업유치 및 지원    | -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| 70              | 70              | 70              | 210   |
| 행사개최         | -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| 2               | 2     |
| 해외시장 마케팅     | -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| 18              | 18              | 18              | 18              | 72    |
|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 | -               | 5               | 5               | 5               | 5               | 5               | 5               | 30    |
| 재원조달(세입)     | 271             | 385             | 459             | 740             | 460             | 462             | 399             | 3,176 |
| 자체수입   도비    | 80              | 136.25          | 164.75          | 266.75          | 196.75          | 197.75          | 159.75          | 1,202 |
| 시비(청주시)      | 80              | 136.25          | 164.75          | 266.75          | 196.75          | 197.75          | 159.75          | 1,202 |
| 국비(과기부)      | 111             | 112.5           | 129.5           | 206.5           | 66.5            | 66.5            | 79.5            | 772   |

※ [과기부] 가속기 구축비 8천억 별도집행